

믿을주는 소비자금융! 안심되는 소비자금융!

CLFA

한국대부금융협회

(100-070)서울시 중구 소월로10,13층(남대문로5가, 단암빌딩) / TEL 02)3487-5800 / FAX 02)6670-9650 / www.clfa.or.kr

문서번호 : 기획조사-42

발신일자 : 2016. 5. 9.

수 신 : 수신처 참조

참 조 :

제 목 :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관련 협조요청

1. 서민금융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귀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 협회에 대부금융사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 연체 정보를 등록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 하는 것과 관련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 주요 내용〉

- ▶ 적용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3개월 이상)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대부금융사 중 신용회복위원회 협약가입사
※ 16.7.25이후 금융위원회 등록 대부금융사로 적용대상 확대
- ▶ 안내내용: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연체중인 고객에게 채무조정 지원 정보 우편으로 안내(기존 우편 통지문에 포함하여 안내 가능)
- ▶ 시행시기: `16.6.1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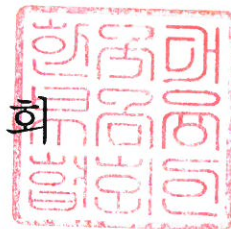
3. 이에 붙임과 같이 금융감독원 관련공문을 송부하오니 각 회원사에서 는 관련업무 처리 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융감독원 관련공문 1부.

문의 : 기획조사부 한성택 대리(전화 02-3487-5800, 내선 115). 끝.



한국대부금융협회



수신처 : 가교에이엠씨대부 등 391개 전회원사 대표이사



금융감독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사본수신 보험감독국, 은행감독국, 저축은행감독국, 자본시장감독국, 상호여전감독국

제목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관련 협조요청

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원은 「효율적인 개인채무조정을 위한 개선방안」(2016.1.28, 관계기관 합동 발표)에 따라 은행권에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귀 회의 회원사가 향후 관련업무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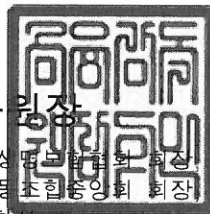
- [관리번호] 행2016-11007
- [지도목적] 연체 우려 채무자를 선제적으로 선별지원하는 프로그램 도입 및 연체중인 고객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
- [지도내용] 붙임 참조
- [유효기간] '16.5.4일부터 '17.5.3일까지(1년)
- [담당자] 금융감독원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서민금융지원팀 류지성 수석조사역, 송명준 선임조사역
- [관련법령] 해당 없음
- [내부경영사항 관련] 해당 없음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리성·투명성·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부·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항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끝.

금융감독원장



수신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대한손해보험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장,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 한국여신금융협회 회장,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신용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 수협중앙회장

담당부서 서민·중소기업지원실 서민금융지원팀
05/04 05/04

선임조사역 송명준 팀장(S) 김학문 실장 전결 05/04 김수현

합의자

시행 서중서민-282 (2016.05.04.) 접수 ()

우 073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 <http://www.fss.or.kr>

전화번호 02-3145-8418 팩스번호 02-3145-8406 / mjsong@fss.or.kr / 비공개(5)

“창의적 금융, 비조치의견서로 도와드립니다.”

<붙임>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 및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1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도입방안

☐ 대 상 : 총 15개 국내은행

(우리은행, SC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 행정지도의 취지

- 채무조정 지원이 주로 연체 발생 후 사후관리에 집중되어, '연체 우려 고객'에 대한 사전 관리가 미흡
- 선제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취약·서민층이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할 필요

☐ 행정지도의 내용

-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체적인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시행토록 요청

☐ 시행시기 : 운영 준비 완료 후 즉시 시행(2016.6월말까지 완료)

2 채무조정 지원정보 안내방안

□ 대 상

-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장기(3개월 이상) 연체정보를 등록하는 금융회사

□ 행정지도의 취지

- 금융회사는 연체중인 고객에게 연체사실 통지시 불이익 정보 (예 : 연체대출현황, 법적절차 착수 등)만 고지하고, 채무조정 지원정보 등 자활방법에 대한 안내가 미흡
-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요청

*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상 장기 연체정보 등록 대상자

□ 행정지도의 내용

- 금융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통보시 연체중인 고객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아래 문구로 안내

■ 귀하는 금융회사 채무를 연체중이므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제공하는 채무조정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금융회사는 장기 연체정보 등록 이전에 연체중인 고객에게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우편으로 안내*

* 금융회사가 연체중인 고객에게 발송중인 기존 우편 통지문(연체사실, 법적절차 등)에 채무조정 지원정보를 포함하여 안내 가능

□ 시행시기

-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6.6.1.부터 시행